

#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(가족돌봄) 신청 접수

□ 가족돌봄 :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가족생활수당 월 40만원 지원하고, 가족에게 선택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제공

구분	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및 맞춤형 지원사업
신청기한	'24. 8. 9.(금) ~ 8. 20.(화)
신청대상자	18세~65세 최중증 발달장애인
신청방법	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향후일정	대상자선정심의회 의결 후 대상자 개별 통보

○ 제출서류

- 읍면동 제출 시 : ① 사업 신청서 ② 사업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, ③ 선정기준표,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○ 신청 제외 대상자
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65세 이상인 자(65세 미만이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제외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시설\*에 입소·이용하는 자, 「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
\* 장애인 거주시설, **지역사회재활시설(복지관, 주간보호센터 등)**, 직업재활시설, 의료재활시설 등
-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**직업재활 서비스** 이용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,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)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(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)에 따라 발달장애인 **주간활동서비스**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활동지원(활동보조·방문목욕·방문간호) 대상자** (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)

참고	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및 맞춤형 사업 주요내용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>

구분	주요 내용
사업대상	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최중증* 발달장애인 *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별도구에 따라 선정 ※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,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대상은 제외
사업기간	'24. 4. ~ 12.
가족생활수당	월 40만원 정액 지급
맞춤서비스	(공통) 공공서비스 안내 및 연계 - 부모심리 상담, 개인별지원계획, 주간활동서비스, GPS 사업, 통합돌봄 등 (선택) 지역사회 서비스 및 가정방문형 서비스(택1) - 경기도 부모휴식지원사업, 시각장애인 마사지 - 홈케어 서비스, 부모양육 코칭
정기 사례관리	정기적으로 가정 방문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